

분류기호	문화 35300-	기 안 용 지	시 행 상 특별취급
문서번호		(전화: 731-6186)	
보존기간	일주·준영구, 10. 5. 3. 1.	지 장	No 15
수 실 치 보존기간			
시행일자	89. 9.	9/11	
보 조 기 관	부 서 장 단 장 문화 담당관	협 조 기 관	문 서 통 배
기안책임자	나 송 주		
경 유 수 실 참	국 안 참 조	방 법 서 류 등 록 부 서 장 426	426
재 목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고시		
제 1 안	내부결재		

## 제 1 장 내부 경제

1. '89. 8. 23 개최한 서울특별시 문화체육위원회의 서의 결과에 의거

법무 고시(안) 내용과 같이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고사하고자 합니다.

가.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문화재 : 벼슬 철

나. 근거법규 : 문화재보호법 제 55조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유형문화재를 치정함.

## 첨부 고시(안) 1부. 끝.

제 2 단

253S

[505-25(2-1) 21(1)告  
35. 9. 9. 記]

190mm x 268mm 일체용지 2장 60g / m<sup>2</sup>

수신 문화재관리국장

삼조 문화재1과장

제목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통보

1. '89. 8. 23.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를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지정내용 : 제1안 "가향" 이기시행. 끝.

제 3 안

수신 수신처 삼조

삼조 총무과장

제목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통보

1. 문화재보호법 제 55조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를 지정하였음을 통보하니,

2. 관련 해당과 (시민봉사실, 세무1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직적과 등) 및 관할동사무소에 통보하여 관계공부를 기록 정리할 것이며 향후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가. 지정내용 : 제1안 "가향" 이기 시행. 끝.

수신처 종로구, 성동구청장

2000

제 4 안

수신 수신처 참조 473

발신 문화담당관

제목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통보

1. 문화재 보호법 제 55조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정내용 : 제 1안 "가" 항 이기 시행, 끝.

수신처 세정과, 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 건축지도과, 재개발과, 도시개발과,  
공원과, 농지과, 수원기전과장

제 5 안

수신 품무처장관

참조 법무담당관

제목 관보 개재 의뢰

1. 별첨 고시문과 같이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하였기 재산소유자 및 관리자  
에게 통지하고자 관보에 개재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고시문 2부. 끝.

1305-25(2-2) 일(1)윤  
85. 9. 9. 승인 2540  
내가아시 종이 한장 뉴스레터  
190mm × 268mm 인쇄용지 1면 70g /m<sup>2</sup>  
9. 10. 11. 1988. 3. 7.

제 6 안

수신 공보관

발신 문화담당관

제목 서 보 개재의뢰

1. 별첨 고시문과 같이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학였기 재산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고자 서보에 개재 의뢰하오니 조사아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고시문 2부. 끝.

제 7 안

수신 수신처 삼조

제목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통보

1. 귀 기관에서 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보호법 제55조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재로 지정되어 등록에 제 10조에 의해 통지하오니.

2. 문화재 보존 관리 관계법규에 의해 원형대로 잘 보존아이 후손에게 길이 남기 줄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아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정내용 : 제1안 "가"항 이기 시행.

첨부 지정서 1부. 끝.

수신처 성동구 성수동1가 642 뚝도수원지사무소장, 종로구청장

고 시 (안)

서울특별시 고시 제 426 호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고시

문화재보호법 제 55조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 7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제 10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1989. 9.

서 울 특 별 시 장

o.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목록

종 별	지정번호	명 칭	지정률건	소재지	구조및규모	관 이 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72호	뚝도수원지 제1정수장	송수설 1동 완속여과지 1개소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642	송수설 1동 312·433 완속여과지 1개소4·433	뚝도수원지 사무소장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73호	파고다공원 팔각정	팔각정 1동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38	1동 160m <sup>2</sup>	종로구청장

제 72 호

## 서울특별시문화재지정서 (안)

명 칭 : 뚜드 스위거 제 1 성수장

수 량 : 을숙길 1동  
연속거리사 1소

위를 서울특별시 문화재로 지정합니다.

89년 1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소유자	주소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교부 재교부 또는 연월일	기록인
농수산물재 료유통과장	서울시 서초구 성수동 1가 842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1가 842	2017. 7. 12	

## [변경사항]

\* 주요사항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시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시지정문화재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시지정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관소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제 73 호

# 서울특별시문화재지정서 (안)

명 칭 : 신라 고원 풀암정

수 량 : 1동

위를 서울특별시 문화재로 지정합니다.

89년 7월 //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소유자	주소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교부 재교부 연월일	기록인
김은수 청주	충주시 종로가 76-2 196-2	충주시 종로가 30	196-1-2	

## (변경사항)

#### \* 주의사항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시지정문화재의 소유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2. 시지정문화재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시지정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관소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 기안용지

(전화: 731-6187)

시행상  
특별취급

분류기호	문화 35300-		
문서번호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 5. 3. 1.	시 장	
수신처 보존기간			
시행일자	'89. 8.		
보 조 기 관	부 서 장 단 장 기획 관 문화 담당관 기안책임자 나 총주	협 조 기 관	문서 통제
경 유 수 신 처 소	네 부 결재	별 첨 파 일	발 송 인
제 목	<u>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회의 결과 및 처리 개회</u>		
<p>1. '89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회의 결과를 별첨과 같이 처리코자 합니다.</p> <p>첨부 1. 문화재위원회 회의 결과 및 처리 개회 1부.</p> <p>2. 회의록 1부.</p> <p>3. 문화재위원회 회의자료 1부. 끝.</p>			

문화재위원회 회의 결과 및 처리 계획

( 회의 개최 사항 )

0. 일 시 : '89. 8. 23. 14:00-18:00

0. 장 소 : 세종문화회관 별관 회의실

0. 참석인원 : 제 1, 2분과위원 14명

( 강영선, 윤국병, 주남철, 맹인재, 이정덕, 박언곤, 김홍식  
김영상, 문명태, 홍윤식, 이현희, 심우준, 이성무, 허영환 )

0. 회의 결과 : 총 7 건 [ 가 결 : 4 건 ]

[ 제 김 도 : 3 건 (공사 2 건 포함) ]

( 회의 결과 요약 )

안 건	결 과 요 약
1. <u>애화문복원계획</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 안 (원위치)에서 3.5m 후퇴, 기존성곽 11m 해체 으로 설계하여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받아 문화재 위원회 심의 후 시행</li> <li>애화문주변 건축허가 신청 (애화동31번지) 건은 문화재 보호구역 앙간 적용하여 허가하고, 저촉될 경우 다시 문화재위원회 회부</li> </ul>
2. <u>서립작각 복원계획</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재관리국의 경복궁 복원시 복원토록 건의 조치</li> </ul>

안 건	결 과 요 약
3. <u>뚝도수원지 문화재 지정</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정수장(송수설·완속역과지)는 문화재로 지정 보존하고</li> <li>· 제2정수장은 모형도와 사진등 자료를 만들어 보존하는 방안 강구</li> </ul>
4. <u>파고다공원네 팔각정 문화재 지정</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팔각정은 유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양구일부"(해시계) 대석은 자료조사 후 차기위원회에 회부</li> </ul>
5. <u>충숙이공 신도비 보호구역 지정</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구역을 지정키로 함. (12.247m<sup>2</sup>)</li> </ul>
6. <u>서지정문화재 보수 공사</u> (가) 성재묘당장설치 공사 (나) 석파정 보수공사 및 대원군별장 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재묘는 연지답사하여 차기위원회에 회부(단순한 보수는 부적합)</li> <li>·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연지 재조사 후 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  <u>소위원회 구성</u> : 박언곤, 주남철, 김홍식</li> </ul>
7. <u>화산군신도비 주변 건축허가(서대문구)</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에서 처리방안 제시            아면 문화재위원회의 제경토우 결정토록 조치</li> </ul>

## 문화재위원회 심의안건

### 1. 예화문 복원 계획

( 심의 개요 )

서울성곽의 4소문의 하나인 예화문의 원예위치 최종확인 및 서울성곽과 조화  
되도록 복원계획안 심의 결정

#### 0. 공사 개요

- . 위치 : 삼선교 - 예화동로터리간 도로중간지점의 '석굴암' 위
- . 건평 : 약 15평 (정면 3간, 측면 2간)
- . 구조 : 우진각지붕, 문루형태
- . 시공 : '90. 1 ~ '91. 12.

#### 0. 복원계획 검토

원위치가 동소문로 석굴암위로 최종확인됨에 따라 원위치와 근접한지점에  
2개안(A,B안) 복원계획 검토

( 심의 결과 및 조처 개획 )

0. 복원안 A (원위치에서 3.5m 후퇴, 기존성곽 11m 해체)으로  
설계하여 문화재관리국 승인을 받아 문화재위원회 심의후 시행.
0. 복원지점 근접 건축이가 신청건은 문화재 보호구역 암각 적용기준에  
의하고 저축될시는 다시 문화재위원회 회부

## 2. 서십자각 복원계획

### ( 심의 개요 )

전통문화지대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경복궁의 서측 망루인 서십자각을 원형대로 복원코자 복원위치 및 방안 김도 결정

### 0. 공사 개요

- 복원위치 : 국립중앙박물관 서측담장 가각 지점
- 규모 : 약 8명 (정면 3간, 측면 3간)
- 영태 : 석조문루위에 망루 설치
- 시공 : '90. 3 - '90. 12.

### 0. 복원계획안 김도 - 4개안

- 1 안 : 원위치 복원
- 2-4 안 : 위치 변경 (중앙박물관내) 복원

### ( 심의 결과 및 조치 개획 )

#### 0. 문화재관리국에서 경복궁 복원시 복원토록 건의 조치

- 서울시의 서십자각 복원계획 집행 보류

### 3. 뚝도수원지 문화재 지정

#### ( 심의 개요 )

서울상수도 최초의 수원지시설인 뚝도수원지(제1,2정수장)를 영구 보존 관리  
코자 서울시 지방문화재로 지정 심의

#### 0. 연      왕

- . 위      치 : 성동구 성수동 1가 642
- . 시설용량 : 500,000m<sup>3</sup>/일
- . 규      모 : 5개정수장 (6개구 72동 급수)

#### 0. 문화재 지정 김토

- . 제1정수장 - 송수실, 완속이과지, 침전지  
(건립년도 1908년)
- . 제2정수장 - 송수펌프실, 급수이과지, 집수정  
(건립년도 1922년)

#### ( 심의 결과 및 조치 개획 )

- 0. 제1정수장 (송수실, 완속이과지)은 서울시 유형문화재 지정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 72호로 지정 조치
- 0. 제2정수장은 모형도나 사진등 자료 작성하여 보존 방안 강구
  - 뚝도수원지사무소에 보존방안 서단 조치

#### 4. 파고다공원네 팔각정 문화재 지정

##### ( 심의 개요 )

3.1 풍습단체 운동의 발상지인 파고다공원네 팔각정 영구 보존 관리하고  
서울시 지방문화재로 지정 심의

##### 0. 현      황

- 위      치 : 종로구 종로2가 38 파고다공원네
- 규      모 : 48.4평 ( $160m^2$ )
- 건립년대 : 1897년 최초의 공원인 파고다공원 개설식 당시 신축

##### 0. 문화재 지정 간토

팔각정 및 파고다공원네 옮기적 있는 앙구일부 (해서개) 대석의 문화재  
지정

##### ( 심의 결과 및 조치 개획 )

##### 0. 팔각정을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 73호로 지정 조치

##### 0. 앙구일부(해서개)대석은 자료조사 후 차기위원회에서 지정여부 심의

## 5. 충숙이공 신도비 보호구역 지정

### ( 설의 개요 )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 70호 충숙이공 신도비에 대한 주변 지역 정화와  
효율적 보호관리를 위하여 보호구역을 지정코자 함.

### 0. 연 황

- 위 치 : 노원구 하계1동 16-1, 32번지
- 문화재 : 충숙이공 신도비 (유형 70호)  
충숙이공 영정 (유형 69호)
- 관 려 자 : 백진이씨 찬성공 종종

### 0. 보호구역 지정 면적

보호구역 대상범위 : 9필지  $12,247m^2$  (3,705평)

### ( 설의 결과 및 조치 개획 )

#### 0. 보호구역 ( $12,247m^2$ ) 지정비로 함.

- 문화재보호법 8조 및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9조에 의거 지정  
조치 .

## 6. 서울시 지방문화재 보수 공사

### ( 심의 개요 )

서울시 지방유형문화재 보수공사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추진 방안 검토 결정  
위함.

0. 대상문화재 : 성재묘(제7호) , 석파정(제26호) , 대원군별장(23호)

#### 0. 심의 감도사항

- 성재묘 - 담장공사시 3층석탑과 주변 석물 이동 필요
- 석파정, 대원군별장
  - 석파정 소유주가 대원군별장을 원위치인 석파정네 이전등 간접적 전민복원 의망 (일부 자비 충당 조건)으로,
  - '89 예산만으로 건물 부분보수유지 안 검토 필요'

### ( 심의 결과 및 조치 개획 )

0. 성재묘는 현지답사와의 단순한 보수보다는 주변 정화 등 검토아이 시행  
— 문화재위원회의 현장답사 후 자문반아 공사 시행고자 함.
0. 석파정, 대원군별장은 조사소위원회 구성 현지 재조사 후 위원회 회부  
결정  
— 소위원회의 현지 재조사 결정에 따라 공사 시행고자 함.

## 7. 화산군 신도비 주변 건축허가

### ( 심의 개요 )

서울시 유형문화재 41호, 화산군 신도비 주변 건축허가에 따른 문화재  
보호 대책안 강구

#### 0. 건축허가내역

- 위치 : 서대문구 북가좌2동 75-212호 1필지
- 규모 : 대지 364 (110평)  
건물 874 (265평, 지상 4층)

#### 0. 심의 검토

- 서대문구청 요구 대책안 검토
  - 화산군 신도비의 동일지변상 위치 이전 및 조경하고 건축물의 설계변경으로 문화재와 조화있게 건축

### ( 심의 결과 및 조치 개획 )

-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결정사항 없음.
-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방안을 강구 제시하면 문화재 위원회의 재검토후 결정토록 조치

회 의 록 ( 요 약 )

문화담당관 : 인사 및 지난회의 결과 및 처리사항 요약 보고  
금일회의 첫번째 안건인 해화문 복원계획 개요 설명

태창근축대교 : 슬라이드로 복원계획안 설명

김영상 : 복원안을 결정 설계한 후 문화재관리국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낭비다.  
안이 결정되면 문화재관리국 승인받아 설계하자.

주남철 : 동감이다.

이정덕 : A 안은 안된다. B 안이 좋다.

주남철 : B 안이 좋다. 공원화 해가며 시공하면 좋겠다.

강영선위원장 : 그럼 B 안으로 결정한다.

태창근축대교 : 복원지점 인접지 균축이 가진 설명

주남철 : 앙각 저촉되지 않으면 균축이 가함이 당연하다.

박언근 : 미관상 조형성 등 고려하여 미가하자

문화담당관 : 보호구역 경계 앙각 적용하여 저촉안되면 미가하고, 저촉시는 위원회  
심의 받겠다.

천위원 : 찬성한다.

문화담당관 : 두번째로 서십자각 복원계획 깨요 설명

대안건축대표 : 슬라이드로 복원계획안 설명

김영상 : 경복궁관비청이 아닌 서울시에서 시비들이 복원하는것은 고려해야 한다.

이정덕 : 복원계획안 5개안이 다 모순점이 있다.

먼 장래생각 사업 안하는것이 좋겠다.

한데 도시 기능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허영환 : 서울시에서 추진할 사업이 아니라고 본다.

김홍식 : 원래위치 도로상에 위치 표시 해두면 좋겠다.

위연들 : 문화재관리국에서 국비로 복원도록 함이 좋겠다.

문화담당관 : 문화재관리국의 경복궁 복원시 복원도록 간의 조치하겠다.

전위원 : 찬성한다.

문화담당관 : 세번째, 뚝도수원지 문화재지정 깨요 설명

뚝도수원지 상수도 확장사업으로 문제점이 있다.

주남철 : 1차 현장조사사항 설명

유영문화재 지정하면 좋겠다.

이정덕 : 상수도확장사업은 중요한 문제니까 1정수장만 지정하자.

- 수원기전과 : 상수도 확장공사 개요 설명  
제1정수장 (송수설·완속이과지)만 지정해야 지장이 없겠다.
- 김영상 : 다른곳에 부지확보 확장사업하면 어떻나
- 수원기전과 : 최소 4년반이 소요된다.
- 주남칠 : 제1정수장(송수설·완속이과지)은 문화재 지정하고, 제2정수장은 후일 생각하여 모형도나 사진등으로 자료를 남기자.
- 전위원 : 찬성한다.
- 문화답당관 : 네번째, 파고다공원내 팔각정 문화재 지정 개요 설명
- 김영상 : 1차조사사항및 내역 설명  
파고다공원내 옮겨져 있는 앙구일부(해시개) 대석도 문화재가치 있다.
- 이정덕 : 팔각정은 오랜 세월 우리시민과 함께한 뜻있는 건물로 문화재 치중 마땅하다.
- 이성무 : 문화재 지정은 신중히 어떤기준을 정하야 객관적으로 치의하는것이 좋겠다.
- 강영천위원장 : 유형문화재로 지정하는것으로 결정하고 대석은 자료조사후 차기회의 심의하자.
- 전위원 : 이의없다.

문화담당관 : 다섯째, 총숙이 공 신도비 보호구역 지정 개요 설명

이현희 : 1차 현장조사 사항 설명, 보호구역 지정에 문제점이 없다.

문명태 : 보호구역 지정되면 차후 건축시에도 심의 받아 하도록 해야된다

문화담당관 : 보호구역 네 건축행위는 법상 당연, 인상변경 이 가신청에 의하되 되어있다.

김영상 : 보호구역 지정함이 좋겠다.

전위원 : 찬성한다.

문화담당관 : 이섯째, 서유형문화재 보수공사 개요 설명  
먼저 성제묘 담장설치 공사 심의하자.

주남철 : 인장을 보니 인상태로 담장 설치공사 아는것은 의미없다.  
3층석탑등 조사 후 주민청탁하고 공식아는것이 좋겠다.

문화담당관 : 성제묘는 현지 재조사하여 위원회 심의 받아 시행하겠다.  
식파정과 대원군별장 보수공사 심의하자.

주남철 : 1차 현장조사 사항 설명

김영상 : 식파정 주변이 많이 빙영된듯하다.

강영선위원장 : 식파정, 대원군별장 문화재 지정강의 설명  
대원군별장이 다시 원래위치인 식파정으로 이전해야 한다.

김 영 상 : 보수관개 이전문제등 객관적으로 현장 재조사함이 필요하다  
소위원회 구성하여 재조사 후 위원회 심의 받아 시행하자.

전 위 원 : 찬성한다. 소위원회 구성 (박언곤, 주남칠, 김홍식)

문화담당관 : 마지막 안건인 화산군신도비 주변 건축허가건 회의 부의 배경  
설명

김 홍 식 : 입장 답사 사항 설명

서대문건축과장 : 차트및 슬라이드로 설명  
건축방행 신도비 동일번지내 이전 정비 건

문화담당관 : 문화재주변 건축물 사진 승인 기준에 대한 지방문화재 적용에  
문제점 있음을 설명

김 영 상 : 잔디위로는 모르지만 대석위에 신도비 올리는것은 안된다.

주 남 칠 : 기 건축히가 되있으니 건축주가 땅을 사서 잔디위에 올려 보호  
하고 주위 협조도 얻어 시행케 하자.

문화담당관 : 구청장 책임하에 주민 동의 인의 조치도록 하자.

김 영 상 : 시에서 대체 구입하여 공원화하면 좋겠다. 주위 주민 협조가  
중요하다.

강영선위원장 : 이 문제는 사안이 오늘 결정하기 힘들다. 원칙적으로는 이전안함이  
좋고 주민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문화담당관 : 이 문제는 좋은 방안을 좀더 강구해보겠다. 폐회선언 및 인사

서 울 特 別 市 文 化 財 委 員

第一分科委員

姓 名	現職王는 重要經歷	專門 分野	住 所	電話 職場
				電話 自宅
강영선 姜永善	前江陵大學長	記念物	종로구 부암동 318-5	
				720-8043
이영노 李永魯	前梨花女大教授	植物	鍾路区東崇洞 1-88	362-6151
				762-6163
윤국병 尹國炳	前高麗大教授	造 景	城東区中谷洞 33-60	267-8131
				440-0735
주남칠 朱南哲	高麗大教授	建築史	시도구 盤浦本洞 盤浦아파트 67 棟 106 号	94-9341-9(619)
				599-4743
맹인재 孟仁在	韓国民俗村代表	民俗学	江南区 大峙洞 938-13	(수원 1331) 8-3425
				556-0035
이정덕 李廷德	高麗大教授	建築史	江東区岩寺 3 洞 울산아파트 4 棟 301 号	94-9341 ~ 9
				478-1137
박언근 朴彦坤	弘益大教授	建築史	恩平区 구산동 27-40	323-0161(448)
				355-5772
최춘환 崔椿煥	明知大教授	古建築	恩平区 麻岩洞 99-48	372-2601 ~ 10
				355-4017
김동우 金東旭	京畿大教授	建築史	江南区 大峙洞 633 청실아파트 8 棟 502 号	수원 6-2175-9
				566-5640
김홍식 金鴻植	明知大教授	古建築	江南区 抑鬱亭洞 漢陽아파트 87 棟 1102 号	372-2601 ~ 10
				548-7842

서 울 特 別 市 文 化 財 委 員

第2分科委員

姓 名	現職 또는 重要經歷	專門 分野	住 所	電話 職場
				電話 自宅
김영상	前 東 亞 日 報 編 銛 局 長	史 学	송파구 麗室洞 우성아파트 7 樓 1103 号	
金永上				423-0231
손보기	前 延 世 大 教 授	考古学	西大門区北河峴洞 1-750	333-1333
孫寶基				362-5158
문명배	東 國 大 教 授	美術史	서울 銅雀区 上道 4 洞 279-229	367-8131
文明大				842-9996
홍윤식	東 国 大 教 授	美術史	順浦区 望遠洞 398-8	267-8131
洪潤植				333-1048
임효재	서 울 大 教 授	考古学	冠岳区 新林 2 洞 103-136	877-5693
任孝宰				878-0275
이현희	誠信女大教 授	史 学	龍山区 東部二村洞	94-0124-8
李炫熙			吐托아파트 1 동 302 호	795-2426
심우준	中 央 大 教 授	書誌学	서초구 方背本洞 758-4	815-5031
沈隅俊			삼호아파트 6 동 1004 호	599-5278
이성무	精神文化研究院 教 授	史 学	서초구 瑞草洞 90-1	234-8112-17
李成茂			우성아파트 5 동 302 호	555-7254
허영환	誠信女大教 授	美術史	서초구 瑞草 1 동 1558-2	94-1024-8
許英桓			現代빌라나동 201 호	586-8528
이태진	서 울 大 教 授	韓 国 社會史	江南区 麟三 2 동 713-5 개나리아파트 20 동 105 호	880-5246 566-3950
李泰鎮				

# 서울特別市文化財委員會會議資料

日時：'89. 8. 23 (水) 14 : 00

서 울 特 別 市

2564

## 順序

1. 惠化門 復元計劃	3
2. 西十字閣 復元計劃	6
3. 韓江水源地 文化財 指定	8
4. 斗立寺公園內 八角亭 文化財指定	10
5. 忠肅李公 神道碑 保護區域 指定	11
6. 市 地方文化財 補修工事	13
○ 聖帝廟 담장設置工事	
○ 石坡亭 補修工事	
○ 大院君 別莊 補修工事	

## 1. 惠化門 復元計劃

史蹟 第10號 서울城廓의 4小門의 하나인 惠化門의 原來位置를  
最終 確認하고 서울城廓과 調和있게 復元可자 합. (復元位置 및  
復元方法 檢討)

### ○ 工事概要

- 位 置: 三仙橋 - 惠化洞로터리間 道路中間地點의 “石窟岩위”
- 建 坪: 約 15坪 (正面 3間, 側面 2間)
- 構 造: 우진각 지붕, 문루形態
- 工事期間: '88.8 ~ '91.12
  - 原位置 確認 및 設計: '88.8 ~ '89.12.
  - 施工: '90.1 ~ '91.12

### ○ 原位置 確認

- 原位置: 東小門路 石窟岩위로 最終 確認
- 確認經緯
  - '89.5. 3. 서울市 文化財委員會 會議 結果
    - \* 惠化門 原來位置을 確認하여 原位置에 復元키로 議決
  - '89.6.17. 서울市文化財委員 (金永上, 朱南哲, 金鴻植) 原位置  
再調査
    - \* 資料檢討 및 現場確認 調査結果 原位置는 東小門路 石窟  
岩위로 最終 確認

### ○ 復元計劃 檢討

- 原位置가 東小門路 石窟岩위로 最終確認됨에 따라 原位置와  
장近接社 地點에 復元하는 方案을 檢討하였음.

### ○ 申請中인 建築許可의 抵觸與否

- 位 置: 惠化洞 31-1, 31-3 (建築主: 김정수)
- 建物規模: 地下 1, 地上 5層 550m<sup>2</sup> (近隣生活施設)
- 惠化門 復元計劃 抵觸與否: A案 및 B案 모두 抵觸豫想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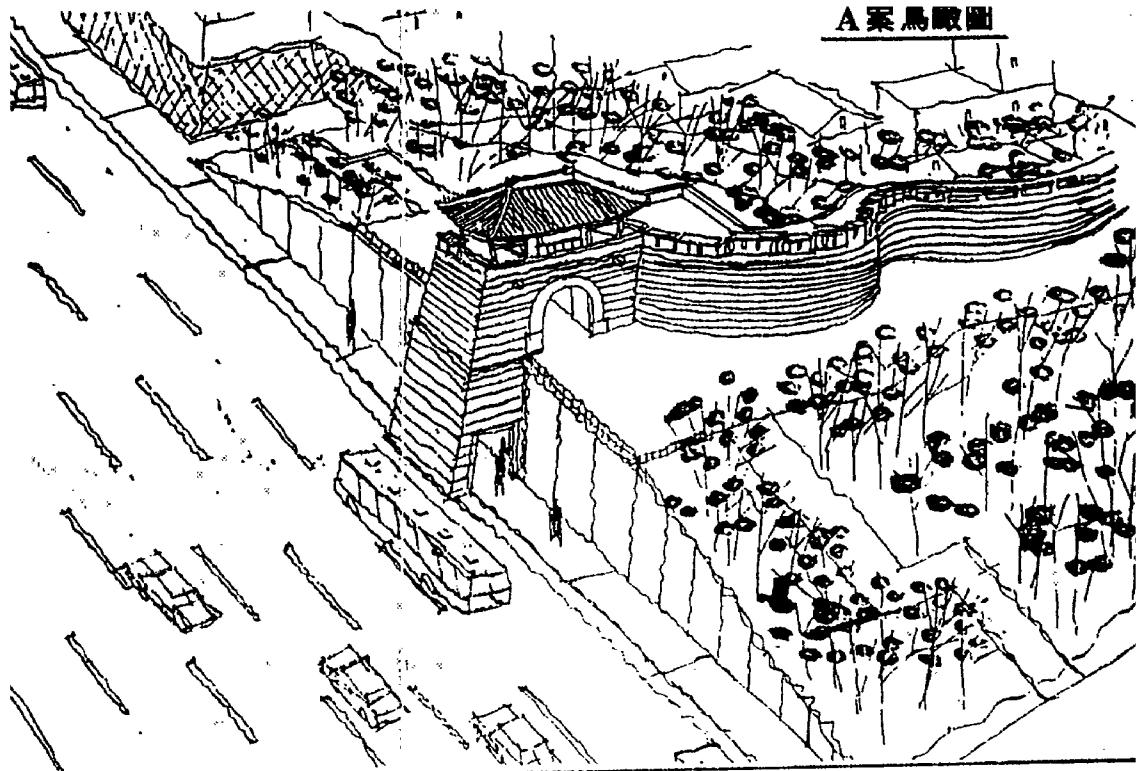
○ 復元計劃(案)

(單位: 千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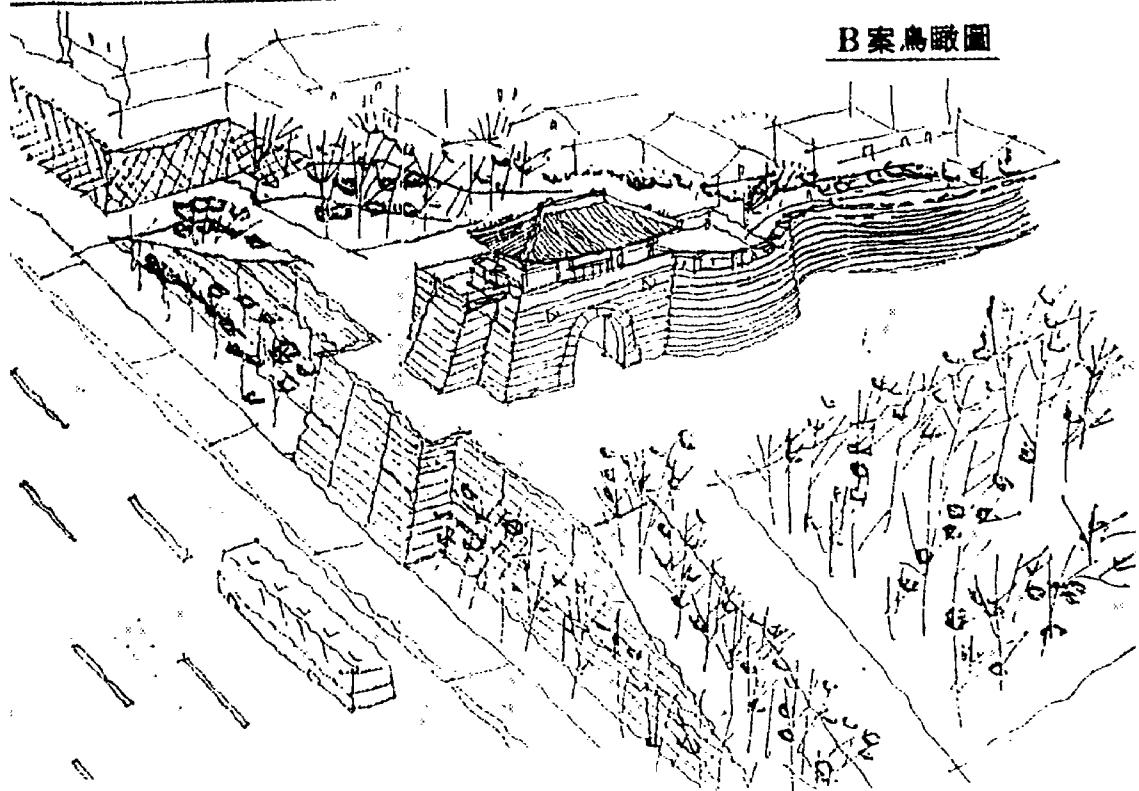
區 分	A 案	B 案
復元規模	約 15 坪 (正面 3 間, 側面 2 間)	約 15 坪 (正面 3 間, 側面 2 間)
復元位置	北側 石窟岩旁 (原位置隣接地點)	石窟岩旁 (原位置隣接地點) * A 案보다 原位置에서 3.5 m 後退
既存城壁斗 斗 關係	既存城壁 7 m 解體	既存城壁 11.5 m 解體
棲地 및 既 存建物 現況	<p>棲地面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私有地: 305.82坪 (10筆地)</li> <li>- 市有地: 184.52坪 (1筆地)</li> </ul> <p>建物現況: 12棟</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私有地內建物: 6棟 (有許可)</li> <li>- 市有地內建物: 6棟 (無許可)</li> </ul>	左 同
工事費	2,051,000	2,206,000
· 建物復元	840,000	995,000
· 造景	294,000	294,000
· 補償費	917,000	917,000
	(305.82坪 × 3,000)	(305.82坪 × 3,000)
長 點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原位置에 近接</li> <li>· 道路와 隣接하여 可視效果 優秀</li> <li>· 既存城壁 保護</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周邊環境과 調和</li> <li>· 空間利用 擴大</li> <li>· 步道活用 便宜</li> </ul>
短 點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步道위에 建物의 位置</li> <li>· 復元形態가 不安定</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原位置 復元의 의 減少</li> <li>· 既存城壁 侵害範圍가 넓음</li> </ul>

2581

A案鳥瞰圖



B案鳥瞰圖



## 2. 西十字閣 復元計劃

傳統文化地帶 復元事業의 一環으로 慶福宮의 西側 망루인  
西十字閣을 原形대로 復元코자 함 (復元位置 및 方案檢討)

### ○ 文化財名稱：史蹟第 117 號 慶福宮의 西側 망루

### ○ 沿革

- 創建：朝鮮太祖 (1395) 慶福宮 建立時 王宮을 지키는 西側 망루로 築造
- 中建：壬辰倭亂 때 燒失, 1866~1867 年 中建
- 撤去：慶福宮一部 撤去時 함께 撤去 (1927~1930 期間中)

### ○ 復元概要

- 復元位置：國立中央博物館 西側 담장 가자지點
- 規模 및 形態
  - 規模：正面 3間 側面 3間 (約 8坪)
  - 形態：석조문루위에 망루設置 (現存 東十字閣과 同一)
- 所要豫算 (推定) : 400,000 千원
- 推進日程 : '89.7~'90.12
- 設計 및 關係部署 協議 : '89.7~'89.12
- 復元工事 : '90.3~'90.12

### ○ 復元計劃案：4 個案

- 1案：原位置 復元
- 2~4案：位置變更 (中央博物館內 復元)

○ 復元計劃(案) 檢討

計劃案 區分	1 案	2 案	3 案	4 案
原位置与否	考證에 의한 原位置復元	移設復元(光化門과 장선파一致)	移設復元(光化門과 영추문 궁장선파一致)	移設復元(영추문 궁장선파一致)
周邊与件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道路中央에 位 置(交通障礙物 安全支障)</li> <li>私有地抵觸(博 物館毗鄰)</li> <li>現道路地下埋設 物 抵觸憂慮</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步道약간 抵觸</li> <li>國立中央博物館內 에 復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步・車道 抵觸</li> <li>步道迂迴 開設 必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步・車道 抵觸안됨</li> <li>障礙要因 없음</li> <li>國立中央博物館內 에 復元</li> </ul>
光化門 및 동십자자파의 關係	동십자자파 均 衡維持	光化門을 基準하 여 동십자자파 左・右 不均衡	光化門을 基準하 여 比較的 均衡 維持	동십자자파 橫軸 線이 맞지 않으 나 光化門을 中 心으로 比較的 均衡維持
國立中央博物館 敷地占用面積	56坪	117坪	68坪(3A案: 20坪)	89坪
工事費	489,000 * 私有地收用費用 (750,000)別途	398,000	424,000 (3A案: 444,000)	380,000
長點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原位置 復元</li> <li>復元效果  가장 優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工事費 適正</li> <li>私有地 収用 不 必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光化門基準 左右比 較的 均衡維持</li> <li>復元效果 次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工事費 가정 低廉</li> <li>工事施工가정 수월</li> </ul>
短點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工事費 大量 多이 所要</li> <li>交通 및 安全問 題發生</li> <li>關聯機關 反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歷史的 意義減少 (移設復元)</li> <li>光化門基準 左右 不均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步道抵觸 地下 埋設物 支障 招來</li> <li>交通障礙發生 대 소 憂慮</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歷史的 意義減少</li> <li>復元效果가 가장 적음</li> </ul>

### 3. 雪岳水源地 文化財指定

#### 〈水源地 現況〉

- (C) 位 置：平昌郡 城東區 壓水洞上街 642
- (C) 敷地面積：58,000坪
- (C) 施設用體：500,000 m<sup>3</sup>/日
- (C) 供水區域：6個區 72個洞(841,000名 給水)

#### 〈文化財指定検討對象 現況〉

##### 第1淨水場

- (C) 洗水室  
構造：鋼筋コンクリート  
面積：312.4 m<sup>2</sup>  
建立年度：1908年
- (C) 急濾濾過池  
規模：21.2m × 35.1m × 6池  
面積：4,433 m<sup>2</sup>  
用置量：50,000吨
- (C) 沈澱池  
規模：23.8m × 53.8m × 3.3m × 2個所  
用置量：8,450 m<sup>3</sup>

##### 第2淨水場

- (C) 洗水用室  
構造：鋼筋コンクリート  
面積：343 m<sup>2</sup>  
建立年度：1922年
- (C) 急濾濾過池  
構造：鋼筋コンクリート  
面積：700 m<sup>2</sup>  
建立年度：1928年頃
- (C) 塚水井  
構造：鋼筋コンクリート  
面積：50 m<sup>2</sup>  
建立年度：1922年 2571

## (沿革)

### 第1淨水場

- 1903.12. 美國인 브란파 보스터워크가 當時 大韓帝國 政府로부터 上水道施設에 대한 特許를 받음.
- 1905. 8. 特許權을 英國인이 設立한 朝鮮水道會社에 讓渡
- 1906. 8. 第1淨水場 起工
- 1908. 8. 第1淨水場 竣工 ( $12,500 m^3 / 日$  用량)

### 第2淨水場

- 1922. 第2淨水場 通水 ( $20,000 m^3 / 日$  用량)

## (特徵)

### 第1淨水場

- 서울 上水道의 最初의 水源地 施設로써 意味가 깊고 여기에 使用한 器材와 施設 一切는 英·美의 製品이었다.
- 建物의 特徵으로 第1送水室은 조적식建物로 入口에 화강석 아취문틀을 두고 左右 窗틀은 반원아취의 窗틀을 쌓고 内部 檻干동자는 陶製로 되어있는 近代式建物

### 第2淨水場

- 建物 모두 철근콘크리트조 建物로써 送水槽室은 外壁에 突出된 필라스터 碇石은 화강암으로 마감한 近代式 建物임.

## (推進經緯)

- 文化財 指定을 爲한 1次 現場 調查
  - 調査日: 1989. 7. 7
  - 調査者: 서울市 文化財委員 金永士, 朱南哲
  - 調査意見: 水道施設의 現場 博物館으로 永久히 保存할 價値가 있으므로 서울市 有形文化財로 指定함이妥當함.

## 4. 파고다公園內 八角亭 文化財 指定

### (現　況)

- 位 置: 서울市 鐘路區 鐘路2街 38番地(1)公園內
- 規 模: 48.4坪 (160m<sup>2</sup>)

### (沿　革)

- 1897년(光武元年) 서울 最初의 公園으로開設되어 파고다公園(現在, 老鷺公園이라 調)과 同時に 八角亭이 建立되었고, 開設과 同時に 新築되었다.
- 서울 宮室公園으로 建여져 音樂 演奏所로 用임되었고, 1913年에 이으리一般人에 每日 公開되었으며,
- 1919. 3. 1 : 3.1運動의 發祥地로써 獨立宣言文이 朗讀된 地로 以後 後門亭이 封鎖되었음.
- 1932年 京城府로 移管되면서 대자 開通하였다.  
(参考文獻: 개마 京城特輯號 京城府史卷1, 京城記略, 서울의 傳統文化等)

### (特　徴)

- 서울에서 最初의 公園으로 京城府로 이어짐.
- 1919年 3. 1. 獨立運動의 民威 出發의 대자由緒 認可

### (推進經緯)

- 文化財 指定은 爲玆 1次 現場 調査  
• 調査日: 1989. 7. 7.
- 調査者: 서울市 文化財委員 金永士, 朱南哲
- 調査意見: 서울市 記念物로 指定하여 安當하니 建立年代(1919) 建物樣式(八角亭) 特異性으로 有形文化財 指定한 安當하니  
矣.

## 5. 忠肅李公神道碑 保護區域 指定

### 〈文化財 現況〉

- 指定內容：서울市 有形文化財 第70號 ('88.4.20)
- 位 置：서울市 道峰區 下溪1洞山16-1, 32番地
- 文化財：忠肅公 李尙吉 神道碑（70號）  
" 影幀（69號）
- 管理者：碧珍李氏 賛成公 宗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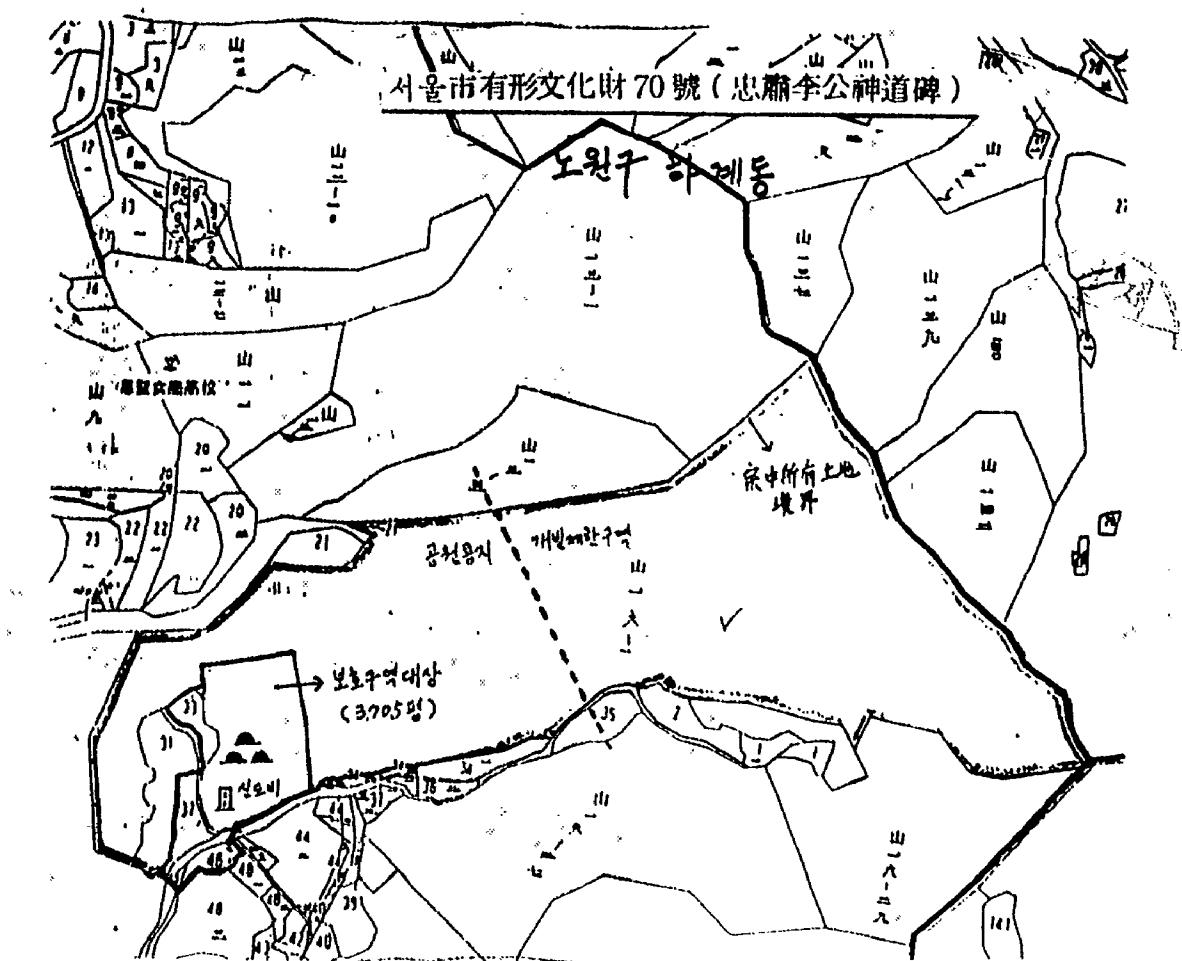
### 〈保護區域 指定 目的〉

- 서울市 地方文化財의 保護區域을 設定하여 各種 現狀 變更 行爲를 事前 規制함으로써 文化財 周邊地域 淨化와 保護管理에 萬全을 期하고자 함

### 〈文化財 保護區域 指定審議 對象〉

文 化 財			保 護 區 域		
種 別	指定番號	文化財名	所 在 地	面 橫	所 有 者
有形文化財	70號	忠肅李公 神道碑	蘆原區下溪洞32	1,213 m <sup>2</sup>	碧珍李氏宗中
			" 32-1	38 m <sup>2</sup>	"
			" 33	864 m <sup>2</sup>	"
			" 46	532 m <sup>2</sup>	"
			" 47	59 m <sup>2</sup>	"
			山16-1	8,926 m <sup>2</sup>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6) 57) 57) 58) 58) 59) 59) 60) 60) 61) 61) 62) 62) 63) 63) 64) 64) 65) 65) 66) 66) 67) 67) 68) 68) 69) 69) 70) 70) 71) 71) 72) 72) 73) 73) 74) 74) 75) 75) 76) 76) 77) 77) 78) 78) 79) 79) 80) 80) 81) 81) 82) 82) 83) 83) 84) 84) 85) 85) 86) 86) 87) 87) 88) 88) 89) 89) 90) 90) 91) 91) 92) 92) 93) 93) 94) 94) 95) 95) 96) 96) 97) 97) 98) 98) 99) 99) 100) 100) 101) 101) 102) 102) 103) 103) 104) 104) 105) 105) 106) 106) 107) 107) 108) 108) 109) 109) 110) 110) 111) 111) 112) 112) 113) 113) 114) 114) 115) 115) 116) 116) 117) 117) 118) 118) 119) 119) 120) 120) 121) 121) 122) 122) 123) 123) 124) 124) 125) 125) 126) 126) 127) 127) 128) 128) 129) 129) 130) 130) 131) 131) 132) 132) 133) 133) 134) 134) 135) 135) 136) 136) 137) 137) 138) 138) 139) 139) 140) 140) 141) 141) 142) 142) 143) 143) 144) 144) 145) 145) 146) 146) 147) 147) 148) 148) 149) 149) 150) 150) 151) 151) 152) 152) 153) 153) 154) 154) 155) 155) 156) 156) 157) 157) 158) 158) 159) 159) 160) 160) 161) 161) 162) 162) 163) 163) 164) 164) 165) 165) 166) 166) 167) 167) 168) 168) 169) 169) 170) 170) 171) 171) 172) 172) 173) 173) 174) 174) 175) 175) 176) 176) 177) 177) 178) 178) 179) 179) 180) 180) 181) 181) 182) 182) 183) 183) 184) 184) 185) 185) 186) 186) 187) 187) 188) 188) 189) 189) 190) 190) 191) 191) 192) 192) 193) 193) 194) 194) 195) 195) 196) 196) 197) 197) 198) 198) 199) 199) 200) 200) 201) 201) 202) 202) 203) 203) 204) 204) 205) 205) 206) 206) 207) 207) 208) 208) 209) 209) 210) 210) 211) 211) 212) 212) 213) 213) 214) 214) 215) 215) 216) 216) 217) 217) 218) 218) 219) 219) 220) 220) 221) 221) 222) 222) 223) 223) 224) 224) 225) 225) 226) 226) 227) 227) 228) 228) 229) 229) 230) 230) 231) 231) 232) 232) 233) 233) 234) 234) 235) 235) 236) 236) 237) 237) 238) 238) 239) 239) 240) 240) 241) 241) 242) 242) 243) 243) 244) 244) 245) 245) 246) 246) 247) 247) 248) 248) 249) 249) 250) 250) 251) 251) 252) 252) 253) 253) 254) 254) 255) 255) 256) 256) 257) 257) 258) 258) 259) 259) 260) 260) 261) 261) 262) 262) 263) 263) 264) 264) 265) 265) 266) 266) 267) 267) 268) 268) 269) 269) 270) 270) 271) 271) 272) 272) 273) 273) 274) 274) 275) 275) 276) 276) 277) 277) 278) 278) 279) 279) 280) 280) 281) 281) 282) 282) 283) 283) 284) 284) 285) 285) 286) 286) 287) 287) 288) 288) 289) 289) 290) 290) 291) 291) 292) 292) 293) 293) 294) 294) 295) 295) 296) 296) 297) 297) 298) 298) 299) 299) 300) 300) 301) 301) 302) 302) 303) 303) 304) 304) 305) 305) 306) 306) 307) 307) 308) 308) 309) 309) 310) 310) 311) 311) 312) 312) 313) 313) 314) 314) 315) 315) 316) 316) 317) 317) 318) 318) 319) 319) 320) 320) 321) 321) 322) 322) 323) 323) 324) 324) 325) 325) 326) 326) 327) 327) 328) 328) 329) 329) 330) 330) 331) 331) 332) 332) 333) 333) 334) 334) 335) 335) 336) 336) 337) 337) 338) 338) 339) 339) 340) 340) 341) 341) 342) 342) 343) 343) 344) 344) 345) 345) 346) 346) 347) 347) 348) 348) 349) 349) 350) 350) 351) 351) 352) 352) 353) 353) 354) 354) 355) 355) 356) 356) 357) 357) 358) 358) 359) 359) 360) 360) 361) 361) 362) 362) 363) 363) 364) 364) 365) 365) 366) 366) 367) 367) 368) 368) 369) 369) 370) 370) 371) 371) 372) 372) 373) 373) 374) 374) 375) 375) 376) 376) 377) 377) 378) 378) 379) 379) 380) 380) 381) 381) 382) 382) 383) 383) 384) 384) 385) 385) 386) 386) 387) 387) 388) 388) 389) 389) 390) 390) 391) 391) 392) 392) 393) 393) 394) 394) 395) 395) 396) 396) 397) 397) 398) 398) 399) 399) 400) 400) 401) 401) 402) 402) 403) 403) 404) 404) 405) 405) 406) 406) 407) 407) 408) 408) 409) 409) 410) 410) 411) 411) 412) 412) 413) 413) 414) 414) 415) 415) 416) 416) 417) 417) 418) 418) 419) 419) 420) 420) 421) 421) 422) 422) 423) 423) 424) 424) 425) 425) 426) 426) 427) 427) 428) 428) 429) 429) 430) 430) 431) 431) 432) 432) 433) 433) 434) 434) 435) 435) 436) 436) 437) 437) 438) 438) 439) 439) 440) 440) 441) 441) 442) 442) 443) 443) 444) 444) 445) 445) 446) 446) 447) 447) 448) 448) 449) 449) 450) 450) 451) 451) 452) 452) 453) 453) 454) 454) 455) 455) 456) 456) 457) 457) 458) 458) 459) 459) 460) 460) 461) 461) 462) 462) 463) 463) 464) 464) 465) 465) 466) 466) 467) 467) 468) 468) 469) 469) 470) 470) 471) 471) 472) 472) 473) 473) 474) 474) 475) 475) 476) 476) 477) 477) 478) 478) 479) 479) 480) 480) 481) 481) 482) 482) 483) 483) 484) 484) 485) 485) 486) 486) 487) 487) 488) 488) 489) 489) 490) 490) 491) 491) 492) 492) 493) 493) 494) 494) 495) 495) 496) 496) 497) 497) 498) 498) 499) 499) 500) 500) 501) 501) 502) 502) 503) 503) 504) 504) 505) 505) 506) 506) 507) 507) 508) 508) 509) 509) 510) 510) 511) 511) 512) 512) 513) 513) 514) 514) 515) 515) 516) 516) 517) 517) 518) 518) 519) 519) 520) 520) 521) 521) 522) 522) 523) 523) 524) 524) 525) 525) 526) 526) 527) 527) 528) 528) 529) 529) 530) 530) 531) 531) 532) 532) 533) 533) 534) 534) 535) 535) 536) 536) 537) 537) 538) 538) 539) 539) 540) 540) 541) 541) 542) 542) 543) 543) 544) 544) 545) 545) 546) 546) 547) 547) 548) 548) 549) 549) 550) 550) 551) 551) 552) 552) 553) 553) 554) 554) 555) 555) 556) 556) 557) 557) 558) 558) 559) 559) 560) 560) 561) 561) 562) 562) 563) 563) 564) 564) 565) 565) 566) 566) 567) 567) 568) 568) 569) 569) 570) 570) 571) 571) 572) 572) 573) 573) 574) 574) 575) 575) 576) 576) 577) 577) 578) 578) 579) 579) 580) 580) 581) 581) 582) 582) 583) 583) 584) 584) 585) 585) 586) 586) 587) 587) 588) 588) 589) 589) 590) 590) 591) 591) 592) 592) 593) 593) 594) 594) 595) 595) 596) 596) 597) 597) 598) 598) 599) 599) 600) 600) 601) 601) 602) 602) 603) 603) 604) 604) 605) 605) 606) 606) 607) 607) 608) 608) 609) 609) 610) 610) 611) 611) 612) 612) 613) 613) 614) 614) 615) 615) 616) 616) 617) 617) 618) 618) 619) 619) 620) 620) 621) 621) 622) 622) 623) 623) 624) 624) 625) 625) 626) 626) 627) 627) 628) 628) 629) 629) 630) 630) 631) 631) 632) 632) 633) 633) 634) 634) 635) 635) 636) 636) 637) 637) 638) 638) 639) 639) 640) 640) 641) 641) 642) 642) 643) 643) 644) 644) 645) 645) 646) 646) 647) 647) 648) 648) 649) 649) 650) 650) 651) 651) 652) 652) 653) 653) 654) 654) 655) 655) 656) 656) 657) 657) 658) 658) 659) 659) 660) 660) 661) 661) 662) 662) 663) 663) 664) 664) 665) 665) 666) 666) 667) 667) 668) 668) 669) 669) 670) 670) 671) 671) 672) 672) 673) 673) 674) 674) 675) 675) 676) 676) 677) 677) 678) 678) 679) 679) 680) 680) 681) 681) 682) 682) 683) 683) 684) 684) 685) 685) 686) 686) 687) 687) 688) 688) 689) 689) 690) 690) 691) 691) 692) 692) 693) 693) 694) 694) 695) 695) 696) 696) 697) 697) 698) 698) 699) 699) 700) 700) 701) 701) 702) 702) 703) 703) 704) 704) 705) 705) 706) 706) 707) 707) 708) 708) 709) 709) 710) 710) 711) 711) 712) 712) 713) 713) 714) 714) 715) 715) 716) 716) 717) 717) 718) 718) 719) 719) 720) 720) 721) 721) 722) 722) 723) 723) 724) 724) 725) 725) 726) 726) 727) 727) 728) 728) 729) 729) 730) 730) 731) 731) 732) 732) 733) 733) 734) 734) 735) 735) 736) 736) 737) 737) 738) 738) 739) 739) 740) 740) 741) 741) 742) 742) 743) 743) 744) 744) 745) 745) 746) 746) 747) 747) 748) 748) 749) 749) 750) 750) 751) 751) 752) 752) 753) 753) 754) 754) 755) 755) 756) 756) 757) 757) 758) 758) 759) 759) 760) 760) 761) 761) 762) 762) 763) 763) 764) 764) 765) 765) 766) 766) 767) 767) 768) 768) 769) 769) 770) 770) 771) 771) 772) 772) 773) 773) 774) 774) 775) 775) 776) 776) 777) 777) 778) 778) 779) 779) 780) 780) 781) 781) 782) 782) 783) 783) 784) 784) 785) 785) 786) 786) 787) 787) 788) 788) 789) 789) 790) 790) 791) 791) 792) 792) 793) 793) 794) 794) 795) 795) 796) 796) 797) 797) 798) 798) 799) 799) 800) 800) 801) 801) 802) 802) 803) 803) 804) 804) 805) 805) 806) 806) 807) 807) 808) 808) 809) 809) 810) 810) 811) 811) 812) 812) 813) 813) 814) 814) 815) 815) 816) 816) 817) 817) 818) 818) 819) 819) 820) 820) 821) 821) 822) 822) 823) 823) 824) 824) 825) 825) 826) 826) 827) 827) 828) 828) 829) 829) 830) 830) 831) 831) 832) 832) 833) 833) 834) 834) 835) 835) 836) 836) 837) 837) 838) 838) 839) 839) 840) 840) 841) 841) 842) 842) 843) 843) 844) 844) 845) 845) 846) 846) 847) 847) 848) 848) 849) 849) 850) 850) 851) 851) 852) 852) 853) 853) 854) 854) 855) 855) 856) 856) 857) 857) 858) 858) 859) 859) 860) 860) 861) 861) 862) 862) 863) 863) 864) 864) 865) 865) 866) 866) 867) 867) 868) 868) 869) 869) 870) 870) 871) 871) 872) 872) 873) 873) 874) 874) 875) 875) 876) 876) 877) 877) 878) 878) 879) 879) 880) 880) 881) 881) 882) 882) 883) 883) 884) 884) 885) 885) 886) 886) 887) 887) 888) 888) 889) 889) 890) 890) 891) 891) 892) 892) 893) 893) 894) 894) 895) 895) 896) 896) 897) 897) 898) 898) 899) 899) 900) 900) 901) 901) 902) 902) 903) 903) 904) 904) 905) 905) 906) 906) 907) 907) 908) 908) 909) 909) 910) 910) 911) 911) 912) 912) 913) 913) 914) 914) 915) 915) 916) 916) 917) 917) 918) 918) 919) 919) 920) 920) 921) 921) 922) 922) 923) 923) 924) 924) 925) 925) 926) 926) 927) 927) 928) 928) 929) 929) 930) 930) 931) 931) 932) 932) 933) 933) 934) 934) 935) 935) 936) 936) 937) 937) 938) 938) 939) 939) 940) 940) 941) 941) 942) 942) 943) 943) 944) 944) 945) 945) 946) 946) 947) 947) 948) 948) 949) 949) 950) 950) 951) 951) 952) 952) 953) 953) 954) 954) 955) 955) 956) 956) 957) 957) 958) 958) 959) 959) 960) 960) 961) 961) 962) 962) 963) 963) 964) 964) 965) 965) 966) 966) 967) 967) 968) 968) 969) 969) 970) 970) 971) 971) 972) 972) 973) 973) 974) 974) 975) 975) 976) 976) 977) 977) 978) 978) 979) 979) 980) 980) 981) 981) 982) 982) 983) 983) 984) 984) 985) 985) 986) 986) 987) 987) 988) 988) 989) 989) 990) 990) 991) 991) 992) 992) 993) 993) 994) 994) 995) 995) 996) 996) 997) 997) 998) 998) 999) 999) 1000)

〈保護區域圖面〉



## 6. 市. 地方 文化財 補修工事

### ○ 聖帝廟 담장 設置工事

#### — 文化財 内 譯 —

- 文化財名 : 서울市 有形文化財 第 7 號 “聖帝廟”
- 位 置 : 中區 芳山洞 4-96 (芳山市場內)

#### (現 況)

- 聖帝廟 담장의 左右側 및 後面이 老朽되어 美觀 沮害

#### (工事概要)

- 시멘트블럭 담장(右側)은 撤去後 사고석 담장 設置하고 左後面을 안쪽으로 設置(담장높이 1.8m, 길이 25m 設置)

#### (事業施行)

- 施行者 : 中區廳長
- 所要豫算 : 7,086 千원

#### (問題點檢討)

- 3層 石塔의 周邊 石物의 位置 移動이 必要함.

### ○ 石坡亭 補修工事

#### — 文化財 内 譯 —

- 文化財名 : 서울市 有形文化財 第 26 號 “石坡亭”
- 位 置 : 鍾路區 付岩洞 316-1

#### (現 況)

- 建物 및 附帶施設이 全體的に 老朽한 狀態임.

#### (工事概要)

- '89豫算으로 部分的 補修計劃임.
- 建物補修 84坪, 담장補修 35m

### (事業施行)

- 施行者：鍾路區廳長
  - 所要豫算：157,446 千원
- |    |         |
|----|---------|
| 市費 | 142,446 |
| 國費 | 15,000  |

### (問題點檢討)

- 所有者는 部分 補修工事아니 3個年 計劃으로 全面 復元工事 施行 要望하고 있어 '89工事 方針 確定必要함

### ○ 大院君 別莊 補修工事

#### 文化財 内容

- 文化財名：서울市 有形文化財 第23號 “大院君 別莊”
- 位 置：鍾路區 弘智洞 125

### (現況)

- 元來 石坡亭의 사방채로서 10坪의 단일 建物인바, 現在 老朽部分이 많아 補修하여 維持管理 必要

### (工事概要)

- 木工事 - 腐蝕된 木部材一部 交替
- 地盤工事 - 解體後 再施工
- 排水路工事 - 石築設置 및 排水路 工事

### (事業施行)

- 施行者：鍾路區廳長
- 所要豫算：13,000 千원(市費)

### (問題點檢討)

- 石坡亭 所有者(신상호)가 차후 元來位置인 石坡亭內로 移轉 復元하기를 希望하나, 移轉時까지는 補修 維持管理가 必要

## 7. 화산군 신도비 주변 건축 이가

### 문화재연왕

- 문화재명 : 화산군 신도비
- 위치 : 서대문구 북가좌2동 75-122 (사유지 - 6m 도시 개획  
도로상 위치)
- 문화재유형 : 서울시 지정 유형문화재 ('80. 6. 11 제41호 지정)
- 건축년도 : 조선조 영조 23년 (1747년) 화산군의 차손 건립

### (건축이가 인왕)

- 위치 : 서대문구 북가좌2동 75-202의 1번지 (건축주: 윤성개)
- 이가일식 : '89. 7. 28 제 168 호
- 규모
  - 면적면적 : 364세(110평)
  - 건물 : 연면적 874세(265평 - 지상4층, 지하1층)
  - 용도 : 근린 생활시설 및 주택
- 인공정 : 지하층 굴착 준비 중 중단 조치 (5%)

### (문제점)

- 1) 화산군 신도비가 도시 개획 도로상에 위치 : 도로개설식은 신도비 이전 밀묘
- 2) 사유재산권 침해 (건축이가 안될시 사유도지 활용 미흡)
- 3) 문화재 주변 강관 치액
- 4) 건축이가 건물이 문화재로부터 약각 25° 선에 치촉

### (심의사항)

#### - 서대문구청의 요구 허락안 강포 -

만 신도비 위치지점이 도시 개획 도로상이므로 동일지번 (75-122번지)내로이전  
건축주 소유도지 일부포함 약 30평 확보하여 기단상향 조성후 신도비 안치하고  
주위 조경

건축이가 사항중 신도비 쪽은 신도비와 조화될 수 있게 설계 일부 변경 추진

(문화재 위원 책문받아 시행)

# 花山君神道碑周邊現況報告

西 大 門 区

2579

# 花山君神道碑周辺現況報告

## 文化財現況

- 文化財 名 : 花山君 神道碑
- 所 在 地 : 西大門區 北加佐2洞75-122 (私有地, 0m都市計劃道路上位置)
- 文化財類形 : 서울市 指定 地方有形文化財 (80.6.11第41號)
- 建立 年度 : 朝鮮祖 英祖23年(1747年) 花山君의 子孫인  
박창문이建立
- 規 模 : 碑身高2.9m 幅1m 厚0.6m  
龜: 1.4m x 3.7m
- 由 来 : 朝鮮祖 중기애 호위도종부회 토종관이었던 花山君의  
行跡에 그 세례名 記錄하기위해 建立  
‘월병’ “가” “이”  
\* 評量: 1974. 7. 1. 京畿道 고양군 유흥 移轉

## 0. 建築許可現況(隣接地)

- 位 置 : 西大門區 北加佐2洞75-202外1筆地 (建築主: 尹成基)
- 許可 日時 : 89.7.28 第168號
- 舍地 面積 : 3.64 m<sup>2</sup> (110坪)
- 規 模 : 延面積 8.74 m<sup>2</sup> (26.5坪 - 地下1層, 地上4層)
- 用 途 : 住宅 및 近隣生活施設
- 現 工 程 : 地下層 基礎 準備中 中斷措置 (進度: 5%)

## 0. 問題点

- 文化財 立地의 不適定

### - 個人所有 私有地上 設置

位 置	面積	所有主	利用 現況	備 考
北加佐洞 7 5 - 1 2 2	1 2 2 m <sup>2</sup>	三河社	花山君 神道碑	私有地
北加佐洞 7 5 - 2 0 2	3 0 4 m <sup>2</sup>	尹成基	建物 新築豫定	私有地
北加佐洞 7 5 - 2 3 8				

### - 周邊 住宅 密集

- 低地帶 位置呈 集微性의 多少 未吸 (- 3m)

- 文化財 指定 未告示

- 私有地上 設置 (7.5坪)

## 0. 處理方案

- 神道碑置 現位置에서 最大한 保存

- 周邊 景觀을 改善且署 造景施設

- 文化財 周邊의 算圖氣造成 ——> 新築建物을 檯式 (折衷形等) または 設計變更

- 神道碑到 同一地帶 同一地上立是 移轉現 基礎設置 (高이 1 m增加)

## 0. 効 果

- 確固한 保護施設 維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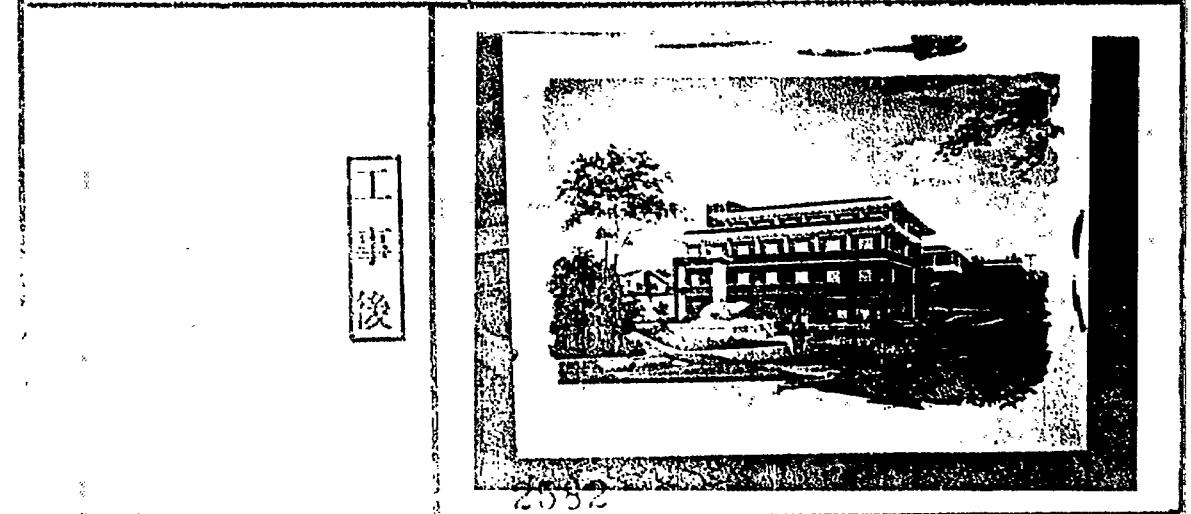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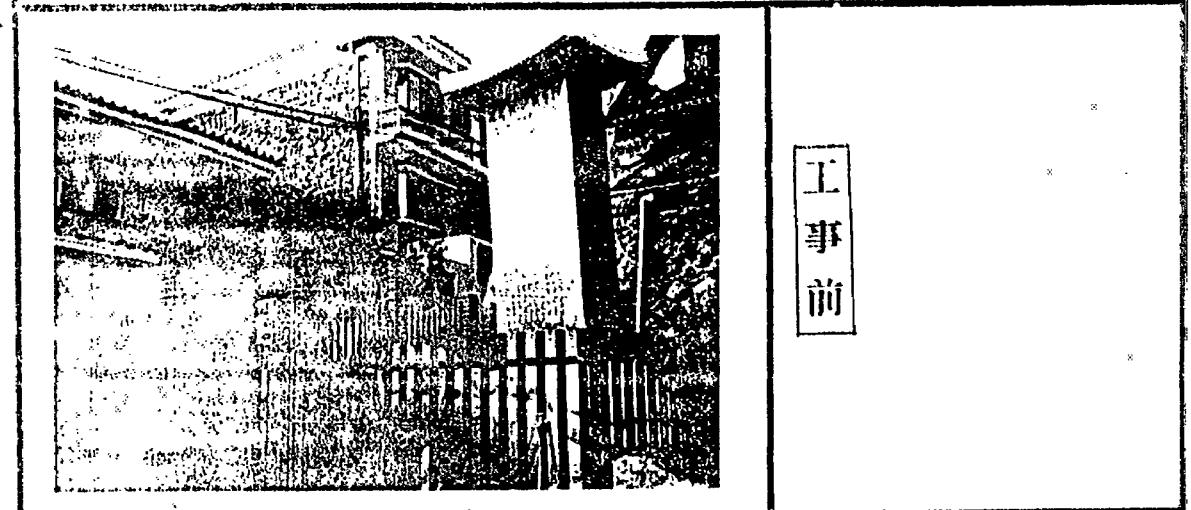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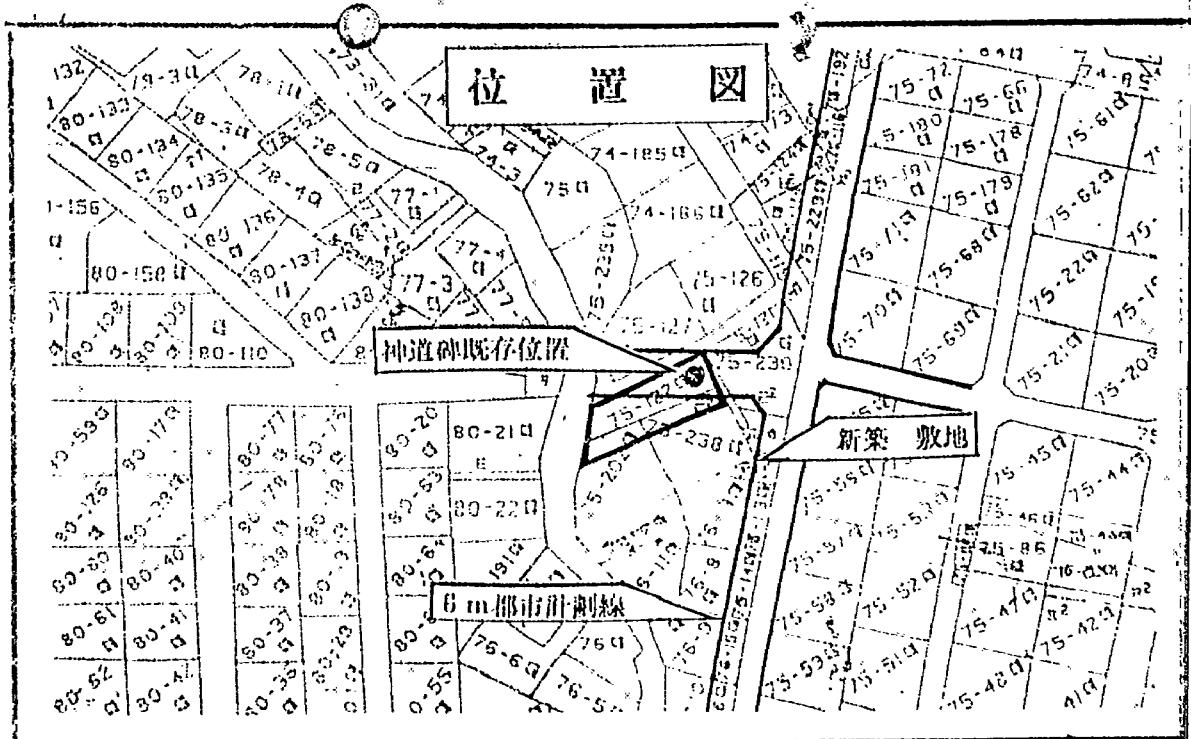
- 神道碑到 象徵性 提高

- 文化財呈서의 効用性 維持 ——> 現位置 永久 保存

- 對市民 接近容易

- 神道碑 保護領域 擴張 (7.5坪 → 47坪)  
\* 擴張部分を 建築主가 寄附豫定

- 周邊環境 改善



[인접 대지 경계선]

[전 칭 간 물]

[인접 대지 경계선]

[도시 개화 도로선]

[회원 친선 도로]

[도시 개화 도로선]

[기존 화산군 신도비 위치 현황도]

變  
更  
前

[인접 대지 경계선]

[전 칭 간 물]

[인접 대지 경계선]

[도시 개화 도로선]

[화산 친선 도로]

[인접 대지 경계선]

[도시 개화 도로선]

[기존 화산군 신도비 위치 현황도]

變  
更  
後